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“실시”의 정의에 수출을 추가함(안 제2조제3호).
-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49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